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954

제안년월일 : 2001년 9월 13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주문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세입·세출건설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추가경정예산,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33인 이하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1년 10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제안이유

예산안 및 결산심사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보교환과 자료수집 활동을 함으로써, 예산안 및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로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및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21

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2001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년 8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 9월 4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건진)

가. 제안이유

○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

나. 주요골자

○ 제명개정

- "비용변상"을 "실비보상"으로 개정

○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관련조항을 정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태호)

가. 비용변상을 실비보상으로 개정

○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정당한 공무집행에 따라 소요된 경비를 충당해 주는 것은 실비보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함.

나. 일비는 출석수당 등으로 개정

○ 예산용어상 일반 회의참석 또는 출장에 따른 소요되는 1일 경비를 말하므로 위원이 출석하여 안전을 검토하는 건에 비추어 출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22

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2001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년 8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 9월 4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건진)

가. 제안이유

○ 현재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시세의 부과정수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고 있으나 체납시세징수제고를 위하여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징수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중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자의 시세는 시장이 직접